

경운대학교 명예·희망퇴직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숭선학원 「정관」 제49조(명예퇴직수당)에 의한 명예·희망퇴직 절차와 수당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「교원인사규정」에서 정한 정년계열교원 및 「직원인사규정」에서 정한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신청대상) ① 명예퇴직은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제2조의 의한 신분으로 우리대학교에서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(휴직기간 제외)하고, 정년퇴직일 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② 희망퇴직은 전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부서 및 학과(부)의 구조조정(폐지통합 등으로 전공불일치, 학과 과원 등) 등의 이유로 본인이 스스로 퇴직하기를 원하는 자로 한다.

제4조(신청대상의 제한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·희망퇴직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매 학기 명예퇴직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,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, 승진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
2.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, 감사기관과 경찰,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
3. 우리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상시킨 자
4. 기타 명예로운 퇴직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② 총장은 교직원 수급계획, 예산 등의 사유로 명예퇴직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5조(신청)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명예·희망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·희망퇴직신청서 <별지서식 1>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퇴직자 선정은 매년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.

③ 명예·희망퇴직 신청자 중 재직기간동안 공적사항을 인정받고자 할 때는 추천서 <별지서식 2>를 소속 부서(학과·부)장 또는, 기타 추천인의 추천을 받아 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④ 명예·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자는 퇴직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.

제6조(퇴직일) ① 교원의 명예·희망퇴직은 2월말 또는, 8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직원의 명예·희망퇴직은 6월말 또는,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대학의 인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, 2항에도 불구하고 수시 명예·희망퇴직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7조(심사위원회) ① 명예·희망퇴직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심사위원회

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와 직원인사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제8조(심사 및 결정통지) ① 담당부서에서 명예·희망퇴직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[별표 2]의 절차에 따라 명예·희망퇴직 대상자를 심사하여, 퇴직대상자를 선정하고 총장이 이사장에게 이를 제청한다.

② 퇴직대상자가 결정이 되면, 총장은 소속 부서(학과·부)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당지급) ①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액은 [별표 1]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, 퇴직수당은 퇴직일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② 희망퇴직수당은 명예퇴직수당의 70%를 지급하되, 재직 중 공적사항 추천서<별지서식 2>의 공적내용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~20%를 가산할 수 있다.

③ 대학의 예산사정상 불가피하게 수당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공지하고 퇴직신청을 철회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, 제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④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(수당포기자에 대한 특별채용) ①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이 제9조제1항의 퇴직수당 수령을 포기하고, 우리대학의 초빙교원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「비전임교원 임용규정」 제3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특별채용(신분전환 임용)할 수 있다.

②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이 제9조제1항의 퇴직수당 수령을 포기하고, 우리대학의 계약직원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「계약직원 인사규정」 제5조에 따라 특별채용(신분전환 임용)할 수 있다.

③ 제1, 2항으로 특별채용되는 초빙교원 및 계약직원의 임용 계약기간은 제3조제1항의 잔여기간 이상을 보장할 수 있다.

제11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또는, 직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할 수 있다.

부 칙 <2020.01.23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10.01.>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

정년 잔여 기간별 대상자	산정 기준	퇴직당시 월봉급액
가.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	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× 정년잔여 월 수	연봉제 교직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78퍼센트의 68.54퍼센트를 적용 (보직수당 제외)
나.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	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× $(60 + \frac{\text{정년잔여월수} - 60}{2})$	
다. 10년 초과인 자	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(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)	

※ **명예퇴직수당** = 산정연봉월액 × 78.0% × 68.54% × 50.0% × 잔여기간 산정방법

[별표 2] <개정 2021.10.01.>

명예·희망퇴직자 선정 절차

절 차	내 용	담 당
퇴직 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명예·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자는 [별지1]의 명예·희망퇴직 신청서를 소속 부서(학과)장을 경유하여 복무관리부서(교학처 교무과 /행정지원처 총무관재과)에 제출한다. ◦ 복무관리부서에서는 신청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행정지원처 경영지원과로 이송한다. 	교학처 교무과/ 행정지원처 총무관재과 행정지원처 경영지원과
↓		
심사위원회 소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명예·희망퇴직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. 	행정지원처 경영지원과
↓		
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심사위원회에서 대학발전 기여도 등에 대해 심사한다. 	심사위원회
↓		
대상자 선정 및 수당책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총장은 명예·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, 명예·희망퇴직수당을 책정한다. 	총 장 (행정지원처 총무관재과·경영 지원과)
↓		
퇴직대상자 제청 및 최종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총장은 명예·희망퇴직 신청서를 첨부하여 대상자를 이사장에게 제청한다. ◦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면 명예·희망퇴직 최종 대상자로 선정한다. 	총 장
↓		
퇴직자 확정 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총장은 명예·희망퇴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자에게 퇴직이 확정되었음을 소속 부서(학과)장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, 퇴직수당은 본인에게 통보한다. 	총 장
↓		
퇴직수당 지급 승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명예·희망퇴직수당은 승인 후 지급한다. 	행정지원처 경영지원과 ↓ 행정지원처 총무관재과

[별지 1]

명예 · 희망퇴직 신청서

소 속		구 분	<input type="checkbox"/> 교 원	직급(등급)	
			<input type="checkbox"/> 직 원	직 위	
성 명		주민등록번호			
주 소				전화번호	
근속년수	신규임용일 : . . .	정년예정일 : . . .	정년잔여기간 : . . .		
<p>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 / 희망 퇴직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교직원 명예 · 희망퇴직 운영 규정에 의거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: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경운대학교 총장 귀하</p>					
* 명예퇴직심의위원회 심의결과		<input type="checkbox"/> 명예퇴직 허가 <input type="checkbox"/> 명예퇴직 불가			
* 수당지급대상기간	개월	지 급 액	금	원(₩)	
* 수당 산출내역					

◇ 유의사항 : *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.

확	인사담당	
인		

[별지 2]

명예 · 희망퇴직 공적사항 추천서

[공적사항 :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]					

경운대학교 총장